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해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546

발의연월일: 2021. 7. 16.

발 의 자: 조해진 · 박대출 · 지성호

황보승희 • 정진석 • 허은아

서병수・박대수・정운천

윤한홍 · 조경태 · 윤창현

최형두 · 김승수 · 서일준

의원(15인)

제안이유

1986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는 농산물의 생산기반 유지 및 안정적 공급과 농업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으나 올해 말 일몰될 예정에 있음.

하지만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가 그동안 총 11번이나 일몰 연장되면서 30년 이상 지속된 만큼 이제는 제도의 항구성이 요구되고 있다는점, 급속한 농가 고령화 등에 따른 농작업의 기계화 및 시설농업화로 농업용 유류 소비가 필수적이라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해당 조세감면은 일몰 없이 계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.

한편, 농업인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제도는 영세한 농업인의 가계비등 지원을 통해 실질적 소득 보전에 기여하고 있는데 이 역시 올해

일몰될 예정임.

인지세 등 농업인에 대한 조세감면은 도·농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, 코로나19로 인한 농업 분야 경제활동 위축, FTA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되므로 당해 조세감면 역시일몰 연장이 요구되고 있음.

이에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면세적용기한을 폐지하고, 인지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농어민의 영농·영어 비용 경감을 위해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감면 제도를 영구화함(안 제106조의2제1항).
- 나. 농어민 지원을 위해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·통장 등의 인지 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(안 제116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고, 제2호는"을 "제2호는"으로 한다. 제116조제2항제3호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3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106조의2(농업·임업·어업용 제106조의2(농업 · 임업 ·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등) ① -----나에 해당하는 석유류(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| 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면세유"라 한다)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 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. 교통・에너지・환경세,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 세(이하 이 조에서 "자동차세" 라 한다)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. 이 경 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 --- 제2호는 -----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 고, 제2호는 2022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 다. 1. • 2. (생략) 1. • 2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② (현행과 같음)

② ~ ② (생략)

제116조(인지세의 면제) ① (생	제116조(인지세의 면제) ① (생
략)	략)
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	②
인지세 면제 기일에 관하여는	
다음 각 호에 따른다.	·.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3. 제5호부터 제7호까지, 제9호,	3
제11호 및 제19호는 <u>2021년 1</u>	<u>2023년</u>
<u>2월 31일</u> 까지 작성하는 과세	12월 31일
문서에만 적용	
4.・5. (생 략)	4.·5. (현행과 같음)